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64318 후원회비
원고, 피항소인	손잡고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4, 1428호 (내수동, 경희궁의아침3단지) 대표자 배춘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영
피고, 항소인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2 (견지동)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101동 803호 (견지동, 종로1가 대성스카이렉스) 대표자 이사 이해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장석윤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가소568891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30.
판 결 선 고	2018. 7.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16,34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96,3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0. 창립총회를 열고 2014. 4. 16.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정의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와 관련된 노동자 피해구제, 법제도개선, 시민모금, 여론형성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2003. 11. 평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후원회비 모금을 위하여 피고 명의의 CMS계좌(국민은행 006001-04-20065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때부터 2016. 5.까지 이 사건 계좌로 원고의 후원회비를 모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30. 윤지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월 1,475,000원, 근무장소를 피고, 업무내용을 '피고의 활동가로서의 기본 책무와 원고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2015. 10. 11.까지 위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2. 이 사건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마. 2015. 12.부터 2016. 5.까지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후원회비가 다음과 같이 입금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부터는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6. 6. 22. 다음의 합계액에서 윤지선에 대한 2014. 7.부터 11., 2015. 2., 3.분 급여·보험료 11,496,348원, 2014. 2.부터 2015. 8.까지 월 300,000원의 사무실 사용료 5,700,000원의 합계 17,196,348원을 정산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3,731,47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기간	금액
2015. 12.	3,588,325원
2016. 1.	3,613,820원
2016. 2.	3,500,360원
2016. 3.	3,468,275원
2016. 4.	3,432,945원
2016. 5.	3,324,100원
합 계	20,927,82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0, 13, 18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 후원회비를 입금받아 원고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임인으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후원회비를 전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과 활동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가 2015. 2. 12. 이 사건 계좌에서 3,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2016. 6. 22. 원고에게 후원회비를 인도하면서 사무실 사용료와 활동가 급여 명목으로 17,196,348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20,196,348원 상당의 후원회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실과 활동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원고가 기부자를 확보하여 자립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해주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피고의 목적 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원고에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것이며, 원고의 자립시에 지원금을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무실과 활동가 지원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 윤지선을 파견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파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2015. 2. 12. 이 사건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인출한 것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제경비를 상환받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윤지선에게 2015. 2.과 3.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에 관하여 2015. 9. 원고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후원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2016. 4.경 원고의 대표인 박래군, 안진결과 사이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후원회비를 정산하면서 피고가 지급한 윤지선에 대한 2014. 7.부터 11., 2015. 2.과 3.분 급여 및 보험료 11,496,348원과 2014. 2.부터 2015. 8.까지 월 300,000원씩의 사무실 사용료 합계 17,196,348원을 공제하는 데에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후원회비에서 이를 정산금으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후원회비를 전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된다. 아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거나 정산금을 공제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윤지선에 대한 급여와 사무실 사용료의 부담 주체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운영위원회 1차 회의가 2014. 3. 28. 개최되었고, 위 회의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경상비 등의 운영비가 3~4천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무실과 활동가는 피고가 제공하기로 하고, 나머지 2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 2015. 2. 25. 개최된 원고의 운영위원회 15차 회의에서 2015년부터 윤지선에 대한 급여를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에 따라 2014. 12. 분, 2015. 1.분, 2015. 4.부터 퇴직시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가 이 사건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무실과 활동가를 제공받음에 있어

초기에는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그 비용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비용부담의 주체를 원고로 변경하면서 구체적으로 부담의 기간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운영위원회 15차 회의 결과에 따라, 2015년에 지급되는 윤지선의 2014. 12.분 급여부터는 원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2014. 7.부터 1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보험료나 사무실 사용료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비용은 당초의 약정대로 피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지원이 피고의 목적범위를 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민법 제34조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 63236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평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각종 사업, 평화증진을 위한 교육 및 조사연구 사업,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정관상 목적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실과 활동가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

하는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위와 같은 정관상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근로자파견계약은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윤지선이 앞서 본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의 업무와 원고의 업무를 함께 처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윤지선을 파견받아 원고의 지휘·명령 아래 원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부터 1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3,000,000원 인출의 정당성 여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9. 1. 개최된 원고 운영위원회 18차 회의에서 이 사건 계좌로부터 2015. 2. 12. 3,000,000원이 '2월, 3월 활동가 인건비' 명목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고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5. 2. 12. 이 사건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면서 출금메모에 '이동_콜비츠전'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는 2016. 4.경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2015. 12.부터 2016. 5.까지의 후원회비에서 윤지선에 대한 2015. 2.과 3.분 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5. 2. 12. 3,000,000원을 인출할 때 이를 윤지선에게 2015. 2.과 3.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제경비로 3,0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2015. 2. 12.경 이 사건 계좌에서 3,000,000원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6. 6. 정산금 공제 관련

원고는 2015년에 지급되는 윤지선의 2014. 12.분 급여부터 이를 스스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 15, 22, 23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윤지선에게 2015. 2.과 3.분 급여로 각 1,4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는 윤지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윤지선에게 급여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변제자인 피고에게 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후원회비에서 위 급여 지급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윤지선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각종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2015. 2.과 3.분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부분에 관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2014. 7.부터 1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보험료와 사무실 사용료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2016. 6. 이루어진 정산금 공제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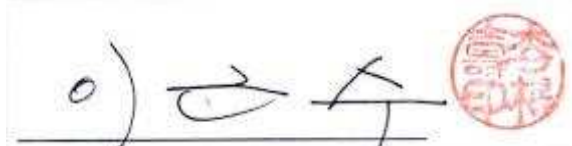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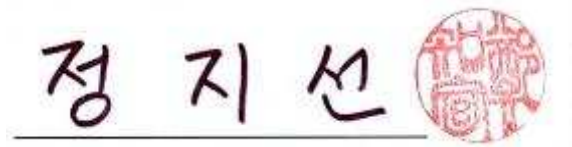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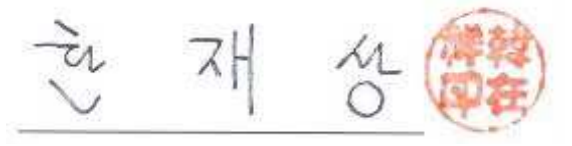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216,348원 $\{=3,000,000 + 17,196,348 - (1,490,000 \times 2)\}$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근수	
	판사	정지선	
	판사	한재상	

정본입니다.

2018.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신정섭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